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"으로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트러스톤ESG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"으로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	<u><삭제></u>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